

##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277
------	-----

제출일시 : 1995. 2 . 20 .

제 출 자 : 서 초 구 청 장

### 1. 제안이유

서울시 수수료 징수 지침의 폐지(의약65321-3057) 및 인구증가율이 1%이하로 억제되었고 향후 가족 계획사업등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진하기위함.

### 2. 주요골자

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등을 규정한 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을 삭제함.

### 3. 관련근거

서울시 의약 65321-3057

### 4. 조례(안)

별첨

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중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, 제3호내지 제5호를 제2호내지 제4호로 한다.
- 제4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,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.
- 별표(수수료액표)중 제2호(피임약제 및 기구보급)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'95. 1. 1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(안)
<p>제 2 조</p> <p>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, 제증명</li> <li>2.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</li> <li>3 - 5 생략</li> </ol> <p>제 4 조</p> <p>①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의 70%는 서울특별시(이하"시"라 한다)수입으로, 30%는 구 수입으로 하여 시수입은 대한가족계획 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에 보조하며 가족계획사업에 재사용하여야하고 구수입은 가족계획요원 행정비로 사용하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자궁내 피임장치 시술요원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를, 구세입 조치하여 가족계획 사업에 재사용 한다.</p> <p>단 자궁내 장치 수수료중 건당1,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 관리비 (대한 불임시술협회)로 사용한다.</p>	<p>제 2 조</p> <p>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, 제증명</li> <li>2. 삭제</li> <li>3 - 5 생략</li> </ol> <p>제 4 조</p> <p>① 삭제</p>

(별 표)

수 수 료 액 표

현 행					개 정 (안)				
구 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고	구 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고
2. 피임 약제 및 기구 보급	가. 피임 약제 (21정 혹은 28정)	1싸이 클	230원	생	(삭 제)				
	나. 콘돔 (6개입)	1 갑	200원	락					
	다. 자궁 내장치	1 건	2000원						